

<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>

성 명	윤 혜 민	소 속	문화체육관광부
훈 련 국	미 국	훈련기간	2020.8.24.~2022.6.23.
훈련기관	Harvard Kennedy School	보고서매수	100 매 (학위논문 대체)
훈련과제	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스포츠이벤트 정책 연구		
보고서제목	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스포츠이벤트 정책 연구 (학위논문 원문제목: <i>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Policy in South Korea</i> )		
내용요약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 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스포츠이벤트(동·하계 올림픽, 월드컵, 아시안게임, 유니버시아드 등)를 모두 개최하였으며, 이를 기반으로 국제스포츠 위상도 상승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히, 빠른 경제 성장 시기에 국제대회는 스포츠 발전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, 그리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</li> </ul> </li> <li>○ 현재에도 국내 지방자치단체, 경기단체 등에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며, 현재 충청권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그러나, 국제스포츠이벤트를 단기간 내 인프라 개선 또는 국비 확보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, 단체장의 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으며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이 점차 과열되면서, 국제대회 유치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최도시의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</li> </ul> </li> <li>○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유치 및 개최하는 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 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연구 (PAE, Political Analysis Exercise)는 국제 스포츠이벤트가 경제적, 사회적,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, 현재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정책의 구조가 적절한지 분석하고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전략적인 유치 및 개최</li> </ul> </li> </ul>		

	<p>정책을 제언하고자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PAE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과거 대회들의 시사점은 무엇인가?</li> <li>- ②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함에 있어 문체부 또는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?</li> <li>- ③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는가?</li> <li>- ④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가?</li> <li>- ⑤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종류별로 다르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?</li> </ul> </li> <li>○ 이를 위해 본 PAE는 우리나라 국제스포츠이벤트에 관한 법과 규정 등을 분석하고, 해외 사례 분석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음</li> </ul> <p>□ 국제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의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정의) 국제스포츠이벤트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,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는 여러 종목 또는 단일 종목 경쟁 대회를 의미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회 규모에 따라 올림픽, 월드컵 등 “메가 스포츠 이벤트” 또는 종목 수가 적거나 참가 선수단이 적은 규모의 대회도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(영향) 국제대회의 경제적, 사회적 효과는 논쟁이 있으며, 대회 규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며 상호 보완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메가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재정 규모가 큰 만큼,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근거가 빈약한 경우 다수</li> <li>- 소규모 행사의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부족하나,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미친다는 견해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현행 한국 국제스포츠이벤트 제도 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도)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유치·개최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(국제경기대회지원법, 문체부 지침 및 기재부 지침)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</li> <li>○ (적용 대상 대회)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(올림픽, 월드컵, 유니버시아드 등) 및 국비 10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○ (절차) 지자체 신청 (개최계획서, 타당성조사신청서) → 문체부 심사(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) → 기재부 심사(국제행사심사위원회) 후 승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사별로 고려사항은 조금씩 다르나, 단계별로 경제성 분석(비용-편익 분석), 정책성 평가(행사의 필요성, 적절성, 스포츠발전 기여도 등), 정부 지원 타당성, 시설 활용가능성 등이 고려됨</li> <li>- 경제성 분석 외 다른 요소의 경우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, 경제성 분석의 중요성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</li> </ul> </li> </ul>
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시사점) 현행 제도의 특성 및 개선 가능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함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불분명함.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“국가 발전”이라는 모호한 목표 설정</li> <li>- ② 국제스포츠이벤트가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, 국가적인 전략 또는 정책 부족</li> <li>- ③ 국제경기대회지원법과 문체부 및 기재부 지침이 개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정의도 상이하여 혼란 존재</li> <li>- ④ 유치 심사 절차가 사전타당성조사, 문체부 심사, 타당성조사, 기재부 심사 등으로 나뉘고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, 행정적인 낭비 존재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해외 사례 연구 (Case Study)</p> <p>&lt;영국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도) 2012 런던올림픽 이후 영국은 “The Gold Framework”를 세우고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, 관련 기관들(DCMS, UK Sport) 간 협력을 강화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“The Gold Framework”와 함께, 메가스포츠이벤트 대상 전략 및 투자전략도 함께 수립하여 관리</li> </ul> </li> <li>○ (기관 간 협력) DCMS와 UK Sport는 영국 내 각 연방(England, Northern Ireland, Scotland, Wales)들의 기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제대회 개최 계획 및 동향을 공유함(UK Event Coordination Group)</li> <li>○ (대상 대회) 영국은 국제스포츠대회를 Pinnacle, Performance, National Event로 나누어서 각 카테고리별로 별도의 전략을 수립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에 더해, Gold Framework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유치할 만한 후보군을 목록화하여 공유하고 관리 (Hosting target list)</li> <li>- 해당 목록은 대회 규모별로 다양한 대회가 포함되어 있으며,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곧 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, 전략적인 유치 결정을 위한 도움을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○ (절차) 대회 비딩(Bidding)절차를 거치는 대회의 경우,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대회가 정부의 투자 원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, 우선순위 대회 (Priority Event)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음</li> <li>- 대회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“eventIMPACTS ToolKit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경제적, 사회적, 환경 및 홍보효과 계산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캐나다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도) 캐나다는 2004년 승인한 “Strategic Framework”를 토대로 국제</li> </ul>
--	--

	<p>스포츠이벤트 유치 정책 (Hosting Policy)를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Hosting Policy는 예산 지원 조건과, 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정함</li> <li>○ (기관 간 협력) Sport Canada (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소속)은 체육단체, 개최도시 등과 함께 운영하는 협력체계인 “International Sports Events Coordination Group (ISECG)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SECG는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또는 행정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유치 및 개최를 관리하며, 개최 대상 행사의 선정 및 예산규모 등을 결정함</li> </ul> </li> <li>○ (대상 대회) 캐나다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국제경기대회를 정책 대상 대회로 인정하고 있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산 지원은 대회 종류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, 지방정부 또는 체육단체가 아닌 일반 행사단체 주최 대회에도 예산 지원 가능</li> <li>- 다만, ISECG가 사전에 검토하고 인정한 대회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,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 가능한 대회의 수를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○ (절차) ISECG의 세부 절차에 따라 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, 지원 규모는 대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, 개최 협약 등을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산 지원은 전체 행사비용의 최대 35%이며, 공공분야 지원기금의 50%를 넘을 수 없고, 적자 보전 성격의 예산지원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덴마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도) 덴마크는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관장하는 별도 전문기관인 Sport Event Denmark (SEDK)를 설립하여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EDK는 덴마크 문화부와 연관된 기관이나, 법률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됨</li> </ul> </li> <li>○ (기관 간 협력) 덴마크는 SEDK, 개최도시, 체육단체 세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“Event Triangle” 제도를 통해 상호 협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EDK는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국제대회 마케팅 컨설팅 및 예산을 지원하고, 개최도시는 홍보,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, 체육단체는 입장권 판매 및 경기 관리를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○ (대상 대회) 특정 종류의 대회를 지정하지는 않으나,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메가스포츠이벤트보다는 소규모의 내실 있는 대회 중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EDK특히 덴마크에서의 인기도, 덴마크 선수들의 경기력, 국제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 대회를 선정함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주요 시사점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 세 나라의 국제스포츠이벤트 정책을 바탕으로 한 주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</li> </ul>
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, 유치 대상 대회 선정부터, 선정 후 유치 지원, 대회 개최까지 협력체계 유지</li> <li>- ② 개최 대상 대회 선정, 예산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전략 하에 대회 개최</li> <li>- ③ 국제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화된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, 해당 기관에서 유치 및 개최에 대 전반을 관리 - ④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, 해당 원칙 고수</li> <li>- ⑤ 대규모의 메가스포츠이벤트 뿐만 아니라,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스포츠이벤트도 별도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</li> </ul> <p>□ 정책 제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제도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은 아래와 같음</li> <li>○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우리나라에서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을 재검토하여 명확하게 수립할 것</li> <li>- ② 중앙 정부 주도의 “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개최전략” 작성</li> <li>- ③ 현재 정책은 대규모 국제대회 중심으로, 메가스포츠이벤트 외에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대회에 대한 별도 전략 수립 필요</li> <li>- ④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유치할 만한 대회 목록을 관리할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주요 기관들,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문체부, 지자체, 체육단체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대회 협력체계(Sports Events Coordination Group)을 설립할 것</li> <li>- ② 다른 부처와의 협력사항을 미리 파악하고, 해당 부처들과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도 정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</li> <li>- ③ 중앙정부의 전략 하에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하위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국제스포츠이벤트 관리를 위한 행정 역량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문체부, 지자체,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“유연한 태스크포스(Adaptive Task Force)를 수립할 것</li> <li>- ②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유치, 개최 등을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할 것</li> <li>- ③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및 각종 지침을 재정비할 것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정책 실행 단계별 로드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의 정책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모든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,</li> </ul>
--	---

- 현재 제도 하에서의 실행 가능성, 신규 예산 필요 여부, 행정적인 추가적인 행정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여 3단계로 구분

○ 1단계는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, 현행 제도 하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로, 추후 단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구성

**1단계: 새로운 정책 구조 수립을 위한 기반 정비**

5.3.1.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유연한 태스크포스 수립

5.1.1.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목적 재검토

○ 2단계는 신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으나, 문체부 및 유관기관에서의 추가적인 인력 투입이 필수적인 과제로 신규 전략 수립 중심

**2단계: 신규 전략 및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수립**

5.1.2. 중앙정부 주도의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개최 전략 수립

5.1.3. 소규모 대회에 대한 별도의 유치전략 수립

5.2.1. 문체부,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설립할 것

5.2.2. 중앙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

○ 3단계는 수립된 신규 전략을 기반으로, 신규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화하기 위함이나 신규예산 등이 소요됨

**3단계: 신규 전략을 확장하고 제도화할 것**

5.1.4.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유치할 만한 대회 목록을 관리할 것

5.2.3. 지자체들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하위전략 마련할 것

5.3.2.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할 것

5.3.3.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및 각종 지침을 재정비할 것